문서번호	생활보장과-2188
결재일자	2016.6.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생활보장과장	생활복지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한미례	유숙희	이승하	강대형	하철승	06/09 박겸수

협 조		

- 강북구 의회 한동진 의원 대표발의 -

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

2016.6.8.

강 북 구

서울특별시 강북구
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

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합니다.

Ⅰ 현 황

□ 조례명: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

□ 발의년월일: 2016년 5월 17일

□ 발의자: 한동진, 구본승, 김영준, 장동우, 김명숙, 이정식, 유인애 의원

※ 한동진 의원 대표발의

Ⅱ 검토 근거 및 법령

□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[행정지원과-13728(2016.05.17.)]

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

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Ⅲ 주요내용

- 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 책무 명시
- 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,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
- ☐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함
- ☐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을 규정 함
- 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, 조직 및 운영, 사업을 규정함
- 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
- 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·감독, 제재 조치를 규정함

Ⅳ 결 론

- ☐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」에 대해 붙임과 같이 동의하고자 함

붙임 1. 조례안 검토의견 1부.

2. 조례안 및 관계법령 1부. 끝.